

# 절차 보호수단 고지

---

최종 업데이트: 2018-10-16

주: 본 문서는 미시건주 교육부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미시건주 교육부 특수교육청



### 주립교육위원회

Casandra E. Ulbrich, 공동 사장  
Richard Zeile, 공동 사장  
Michelle Fecteau, 비서  
Tom McMillin, 회계담당자  
Nikki Snyder, 미국교육협회 대표[NASBE]  
Pamela Pugh  
Lupe Ramos-Montigny  
Eileen Lappin Weiser

### 당연직 위원

Rick Snyder, 주지사  
Sheila A. Alles, 임시 주교육감



---

미시건주 교육부 [*Michigan Department of Education (MDE)*]

특수교육청

608 West Allegan Street

P.O. Box 30008

Lansing, MI 48909

517-241-7075

[MDE 웹사이트](http://www.michigan.gov/mde) ([www.michigan.gov/mde](http://www.michigan.gov/mde))

장애학생 교육에 관한 연방법, 장애인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학교는 IDEA 및 미 교육부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절차적 보호조항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는 고지를 장애아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본 고지의 사본은 아래와 같이 부모에게 사본을 송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년도에 1 회만 부모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1) 최초 의뢰 또는 부모 평가 요청 시; (2) 34 CFR §§300.151 내지 300.153 에 따라 일차 주 고발을 수령하고 학년도에 §300.507 에 따라 최초 적법 절차 고발을 수령할 경우; (3) 배치 변경을 구성하는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4) 부모 요청 시. [34 CFR §300.504(a)]

본 절차 보호수단 고지에는 §300.148 (공공 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일방적 배치), §§300.151 내지 300.153 (주 고발 절차), §300.300 (동의), §§300.502 내지 300.503, §§300.505 내지 300.518, 및 §§300.530 내지 300.536 (B 절, E 하위절 규정의 절차 보호수단), 및 §§300.610 내지 300.625 (F 하위절 정보 규정의 기밀유지)에 따라 제공되는 전체 절차 보호수단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 두문자어는 본 문서에서 사용됩니다:

ALJ	행정법 판사 [ <i>Administrative Law Judge</i> ]
BIP	행동개입계획 [ <i>Behavioral Intervention Plan</i> ]
FAPE	적정 무상 공교육 [ <i>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i> ]
FERPA	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 <i>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i> ]
FBA	기능적 행동 평가 [ <i>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i> ]
IDEA	장애인교육법 [ <i>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 ]
IEE	독립 교육 평가 [ <i>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i> ]
IEP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 <i>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 ]
MDE	미시건주 교육부 [ <i>Michigan Department of Education</i> ]
OSE	특수교육청 [ <i>Office of Special Education</i> ]
SOAHR	주 행정심리규칙사무국 [ <i>State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and Rules</i> ]

# 목차

절차 보호수단 고지.....	13
일반 정보.....	13
사전 서면 고지.....	13
34 CFR §300.503.....	13
고지 .....	13
고지의 내용 .....	13
고지로 사용되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	14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고지.....	14
모국어.....	14
34 CFR §300.29 .....	14
전자 메일 .....	15
34 CFR §300.505.....	15
부모 동의 - 정의.....	15
34 CFR §300.9 .....	15
동의 .....	15
부모 동의 .....	15
34 CFR §300.300.....	15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 .....	15
주 피보호자의 최초 평가에 대한 특례 규칙 .....	16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	17
부모 동의의 철회.....	17
재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	18

부모 동의를 구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의 기록.....	18
기타 동의 요건 .....	18
독립 교육 평가.....	19
34 CFR §300.502.....	19
일반 .....	19
정의 .....	19
공공 비용으로 평가를 받을 부모의 권리 .....	20
부모 주도 평가 .....	20
행정법 판사의 평가 요청 .....	21
학군 기준.....	21
정보의 기밀유지.....	22
정의.....	22
34 CFR §300.611.....	22
개인 식별 정보.....	22
34 CFR §300.32 .....	22
부모에 대한 고지 .....	23
34 CFR §300.612.....	23
접근권 .....	23
34 CFR §300.613.....	23
접근 기록 .....	24
34 CFR §300.614.....	24
아동 일 인 이상에 관한 기록 .....	24
34 CFR §300.615.....	24

정보 형식 및 장소 목록 .....	24
34 CFR §300.616 .....	24
수수료 .....	24
34 CFR §300.617 .....	24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개정 .....	25
34 CFR §300.618 .....	25
심리를 받을 권리 .....	25
34 CFR §300.619 .....	25
심리 절차 .....	25
34 CFR §300.621 .....	25
심리 결과 .....	25
34 CFR §300.620 .....	25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 동의 .....	26
34 CFR §300.622 .....	26
보호수단 .....	26
34 CFR §300.623 .....	26
정보의 파기 .....	27
34 CFR §300.624 .....	27
학생의 권리 .....	27
34 CFR §300.625 .....	27
조정 .....	28
조정 .....	28
34 CFR §300.506 .....	28
일반 .....	28
요건 .....	28

조정인의 중립성.....	30
주 고발 절차 .....	31
적법 절차 심리 고발과 주 고발 절차의 차이.....	31
주 고발 절차의 채택 .....	31
34 CFR §300.151.....	31
일반 .....	31
적절한 서비스 거부에 대한 구제책.....	31
최소 주 고발 절차 .....	32
34 CFR §300.152.....	32
시한; 최소 절차 .....	32
시한 연장; 최종 결정; 이행 .....	32
주 고발 및 적법 절차 심리 .....	32
주 고발의 제기.....	33
34 CFR §300.153.....	33
적법 절차 고발 절차 .....	35
적법 절차 고발장 제출.....	35
34 CFR §300.507.....	35
일반 .....	35
부모에 대한 정보.....	35
적법 절차 고발.....	35
34 CFR §300.508.....	35
일반 .....	35
고발장의 내용 .....	36

적법 절차 고발에 관한 심리 이전에 요구되는 고지 .....	36
고발의 충분성 .....	36
고발장 개정 .....	36
적법 절차 고발에 대한 학군의 대응.....	37
적법 절차 고발에 대한 기타 당사자의 대응 .....	37
건본 양식 .....	37
34 CFR §300.509.....	37
적법 절차 고발 및 심리가 계류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배치 .....	38
34 CFR §300.518.....	38
해결 절차 .....	38
34 CFR §300.510.....	38
해결 회의.....	38
해결 기간.....	39
30 역일 해결 기간의 조정 .....	39
서면 합의 계약 .....	40
계약 검토 기간 .....	40
적법 절차 고발 심리 .....	41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41
34 CFR §300.511.....	41
일반 .....	41
공정한 행정법 판사.....	41
적법 절차 심리의 주제 .....	41



심리 요청 기한 .....	41
기한에 대한 예외조항 .....	42
심리권 .....	42
34 CFR §300.512.....	42
일반 .....	42
추가 정보 공개 .....	42
심리에서 부모의 권리 .....	42
심리 결정 .....	43
34 CFR §300.513.....	43
행정법 판사의 결정.....	43
해석 조항.....	43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별도 요청 .....	43
자문위원회 및 일반인에 대한 평결 및 결정 .....	43
항소 .....	44
결정의 최종 효력; 항소; 공정한 재심.....	44
34 CFR §300.514.....	44
심리 결정의 최종 효력 .....	44
심리 일정 및 편의 .....	44
34 CFR §300.515.....	44
소송 제기 시한을 비롯한 민사소송 .....	44
34 CFR §300.516.....	44
일반 .....	44
시한 .....	45

추가 절차.....	45
지방법원의 관할권.....	45
해석 규칙.....	45
변호사 수임료.....	45
34 CFR §300.517.....	45
일반.....	45
수임료 재정.....	46
장애아 징계 절차.....	48
교직원의 권한.....	48
34 CFR §300.530.....	48
사안별 판단.....	48
일반.....	48
추가 권한.....	48
서비스.....	48
발현 판단.....	49
행동이 아동의 장애 발현이라는 판단.....	50
특수 상황.....	50
정의.....	51
통지.....	51
징계성 이동으로 인한 배체 변경.....	51
34 CFR §300.536.....	51
상황 판단.....	52

34 CFR § 300.531.....	52
항소.....	52
34 CFR § 300.532.....	52
일반 .....	52
행정법 판사의 권한.....	52
항소 중 배치.....	53
34 CFR §300.533.....	53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 .....	53
34 CFR §300.534.....	53
일반 .....	53
징계 문제에 대한 숙지의 근거 .....	54
예외 .....	54
숙지의 근거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조건 .....	54
법집행 및 사법 당국 회부 및 이에 의한 조치.....	55
34 CFR §300.535.....	55
기록의 전달 .....	55
공공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한 부모에 대한 요건 .....	56
일반.....	56
34 CFR §300.148.....	56
사립학교 배치에 대한 변상.....	56
변상에 대한 제한.....	56
성년 시 부모의 권리 이전 .....	57
34 CFR §300.520.....	57

별첨 A - 연방 정의 .....	58
Serious Bodily Injury .....	58
18 USC 1365(h) .....	58
무기 .....	58

---

## 일반 정보

---

### 사전 서면 고지

#### 34 CFR §300.503

#### 고지

귀하의 학군(본 고지에 사용하는 "학군에는 공립학교학원이 포함됨)은 아래 각 호의 경우 귀하에게 서면 고지를 송부해야 합니다(귀하에게 특정 정보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1. 귀 자녀의 식별이나 평가, 교육 배치, 귀 자녀에게 제공되는 적정 무상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개시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2. 귀 자녀의 식별이나 평가, 교육 배치, 귀 자녀에게 제공되는 *FAPE* 개시 또는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 고지의 내용

서면 고지는:

1. 귀 학군이 제안 또는 거부하는 조치를 기술해야 합니다.
2. 귀 학군이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귀 학군이 조치의 제안이나 거부를 결정할 때 사용한 각 평가 절차나 평가, 기록, 보고를 기술해야 합니다.
4. 귀하가 *IDEA B* 절의 절차 보호수단 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귀 학군이 제안 또는 거부하는 조치가 최초 평가 의뢰가 아닌 경우 절차 보호수단에 대한 설명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귀하에 통지해야 합니다.
6. 귀하가 *IDEA B* 절의 이해에 도움을 얻기 위해 문의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 귀 자녀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팀이 검토한 기타 선택과 해당 선택이 불허된 사유를 기술해야 합니다.
8. 귀 학군이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한 기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 고지로 사용되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부모가 수령하는 문서가 §300.503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사전 서면 고지의 일환으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고지

고지는:

1.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고지는 여의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모국어나 귀하가 사용하는 기타 소통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의 모국어나 기타 소통 방식이 서면 언어가 아닌 경우, 귀 학군은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귀하의 모국어나 기타 소통 방식으로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귀하를 위해 고지를 구두로 번역합니다.
2. 귀하가 고지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3. 1 및 2 가 충족되었다는 서면 증빙이 마련됩니다.

## 모국어

### 34 CFR §300.29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에게 사용될 경우, 모국어는 아래 각 호를 의미합니다:

1. 일반적으로 해당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 또는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아동의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2. 아동과의 직접 연락 시(아동 평가 포함), 일반적으로 아동이 자택이나 학습 환경에서 사용하는 언어.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 서면 언어가 없는 개인의 소통 방식은 해당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 수화, 점자, 구두 통신).

## 전자 메일

### 34 CFR §300.505

귀 학군이 이메일 문서 수령을 부모에게 제의하는 경우, 귀하는 아래 각 호의 이메일 수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서면 고지;
2. 절차 보호수단 고지
3. 적법 절차 고발에 관한 고지.

## 부모 동의 - 정의

### 34 CFR §300.9

#### 동의

동의를 아래 각 호를 의미합니다:

1. 귀하가 동의를 제공하는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는 귀하의 모국어나 기타 소통 방식(예, 수화, 점자, 구두 통신)으로 귀하에게 상세히 고지되었습니다.
2. 귀하는 해당 조치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며, 동의는 해당 조치를 기술하고 공개될 기록 및 대상을 기재합니다.
3. 귀하는 동의가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귀하의 동의 철회는 귀하가 동의를 제공한 이후부터 귀하가 동의를 철회하기 전에 이루어진 조치를 무효(취소)로 하지 않습니다.

## 부모 동의

### 34 CFR §300.300

####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

귀 학군은 예정된 조치의 사전 서면 고지를 귀하에게 먼저 제공하고 **부모 동의**-정의에 기술하는 대로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귀 자녀가 *IDEA* B 절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귀 자녀의 최초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 학군은 귀 자녀가 장애아인지 결정할 최초 평가에 대해 귀하의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초 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는 학군이 귀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하는데도 동의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 자녀가 공립학교에 등록되거나 귀하가 귀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하기를 원하고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귀 학군은 동 법의 조정이나 적법 절차 고발, 해결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활용하여 귀 자녀에 대해 최초 평가의 진행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를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 학군은 이 같은 상황에서 귀 자녀의 평가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귀 자녀를 배치, 식별, 평가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 **주 피보호자의 최초 평가에 대한 특례 규칙**

아동이 주 피보호자이고 부모와 거주하지 않을 경우 -

학군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아동이 장애아인지 판단할 최초 평가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군이 자녀의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2. 주법에 따라 부모의 권리가 종료된 경우
3. 아동의 일반 보호를 담당하는 판사 또는 공공기관이 교육 결정을 내리고 최초 평가에 동의할 권리를 부모 이외의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IDEA* 에 사용되는 주 피보호자는 아래 각 호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1. 수양 자녀. 단, 아동의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 또는 아동의 일반 보호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자녀를 대신하여 교육 결정을 내릴 권리를 아동의 양부모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주법에 따라 주 피보호자로 간주되는 아동
3. 주법에 따라 법원의 피보호자로 간주되는 아동
4. 공공 아동복지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



##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귀 학교는 귀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 전에 귀하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며, 해당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가 귀 자녀가 최초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한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해당 동意的 제공을 거부할 경우, 귀 학교는 귀하의 동의 없이 귀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귀 자녀의 *IEP* 팀이 권장하는)가 제공될 수 있다는 동의나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절차적 보호수단(즉, 조정, 적법 절차 고발, 해결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귀 자녀가 최초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한 동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당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학교가 귀하의 동의를 구했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귀 자녀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귀 학교는:

1. 귀 자녀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불이행에 대해 귀 자녀에게 *FAPE* 를 제공해야 할 요건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동意的가 요청되었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해 *IEP* 회의를 갖거나 귀 자녀를 위해 *IEP* 를 개발할 의무가 없습니다.

## 부모 동意的의 철회

귀하가 귀 학교가 귀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공한 귀하의 동意的를 철회(취소)한다고 학교에 서면으로 고지할 경우, 귀 학교는:

1. 귀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IDEA* 규정 §300.503 에 따라 귀하의 서면 동意的 철회 수령을 토대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중단 제안의 신속한 사전 서면 고지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 귀 자녀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동의나 판결을 구하기 위해 적법 절차(즉, 조정, 해결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귀 자녀에게 후속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불이행에 대해 귀 자녀에게 *FAPE* 를 제공해야 할 요건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5.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후속 제공을 위해 *IEP* 회의를 갖거나 귀 자녀를 위해 *IEP* 를 개발할 의무가 없습니다.
6. 동意的 철회를 이유로 귀 자녀가 받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하여 귀 자녀의 교육 기록을 개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재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귀 학군은 아래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귀 자녀를 재평가하기 전에 귀하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1. 귀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
2. 귀하가 이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가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귀 학군은 귀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 거부를 무효로 하기 위해 조정이나 적법 절차 고발, 해결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이용하여 귀 자녀의 재평가를 추진할 수 있으나 이를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초 평가와 마찬가지로, 귀 학군은 본 방식의 재평가 추진을 거절할 경우 *IDEA B 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 부모 동의를 구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의 기록

귀 학군은 최초 평가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 재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를 구하고 주 피보호자 최초 평가를 위해 부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이러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군의 노력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실제 전화통화나 시도 및 통화 결과의 세부 기록
2. 부모에 송부된 서한 및 접수 응답 사본
3. 부모의 자택이나 직장에 대한 상세한 방문 기록 및 방문 결과.

## 기타 동의 요건

귀 학군이 아래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귀 자녀의 평가나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
2. 시험이나 기타 평가 이전에 전체 아동의 부모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아동에게 제공되는 시험이나 평가를 자녀에게 제공.

귀 학군은 서비스나 활동에 대한 귀하의 동의 거부를 귀하나 귀 자녀의 기타 서비스나 편의, 활동을 거부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귀 자녀를 자비로 사립학교에 등록시켰거나 홈스쿨링을 실시하고, 귀 자녀의 최초 평가나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귀하의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학군은 동의 무효 절차(즉, 조정, 적법 절차 고발, 해결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이용할 수 없으며 귀 자녀가 공정한 서비스(부모가 배치하는 사립학교 장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간주할 의무가 없습니다.

## 독립 교육 평가

### 34 CFR §300.502

#### 일반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귀하는 귀 학군이 입수한 귀 자녀의 평가에 동의할 경우 귀 자녀에 대해 독립 교육 평가 평가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IEE)*]를 입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IEE* 를 요청하는 경우, 학군은 *IEE* 를 입수할 수 있는 장소와 *IEE* 에 적용되는 학군의 기준에 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정의

*IEE* 는 귀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군에 고용되지 않은 적격 시험관이 진행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공공 비용은 학군이 평가 비용을 전액 지불하거나 그밖에 *IDEA* B 절의 규정에 따라 각 주가 동법 B 절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 지방, 연방 및 민간 지원 출처를 활용할 수 있는 평가를 귀하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공 비용으로 평가를 받을 부모의 권리

귀하는 아래 조건에 따라 귀 학군이 입수하는 귀 자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공 비용으로 귀 자녀의 *IEE* 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귀하가 공공 비용으로 귀 자녀의 *IEE* 에 대한 서면 신청을 제출할 경우, 귀 학군은 신청을 접수한 후 칠 역일 안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아래 각 호에 대한 학군의 의사를 적시해야 합니다: (a) 공공비용으로 *IEE* 를 제공하거나 (b) *IEE* 의 학군의 자녀 평가가 적절하다고 입증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 고발을 제출함.
2. 귀 학군이 심리를 요청하고 귀 자녀에 대한 귀학군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최종 결정이 날 경우에도, 귀하는 *IEE* 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공공비용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3. 귀하가 자녀의 *IEE* 를 요청하는 경우, 학군은 귀하가 귀 학군이 입수한 귀 자녀의 평가에 반대하는 사유를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단, 귀 학군은 해명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공공비용으로 귀 자녀의 *IEE* 를 제공하거나 귀 자녀에 대한 학군의 평가를 방어하기 위해 정식 심리 절차를 요청하기 위한 적법 절차 고발을 제출하는 함에 있어 부당한 지연을 해서는 안 된다.
4. 귀하가 입수하는 *IEE* 가 학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학군은 적법 절차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 평가가 학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이 날 경우, 귀하의 *IEE* 경비에 대한 공공 변상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귀 학군이 귀하가 반대하는 귀 자녀의 평가를 진행할 때마다 귀하는 1 회에 한하여 공공 비용으로 귀 자녀의 *IEE*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주도 평가

귀하가 공공비용으로 자녀의 *IEE* 를 입수하거나 자비로 입수한 자녀의 평가를 학군과 공유하는 경우:

1. 귀 자녀의 평가 결과가 *IEE* 에 대한 학군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귀 자녀에 대한 *FAPE* 제공에 대한 결정에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2. 귀하나 귀 학군은 귀 자녀에 관한 정식 심리 절차에서 평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법 판사의 평가 요청**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가 적법 절차 심리의 일환으로 자녀의 *IEE* 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 비용은 공공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 **학군 기준**

*IEE* 가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 평가 장소나 시험관 자격을 비롯한 평가가 입수되는 기준은 학군이 평가를 발의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이 *IEE* 에 대한 귀하의 권리와 일치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제외하고, 학군은 공공비용으로 *IEE* 를 구하는 것에 관한 조건이나 일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 정보의 기밀유지.

---

### 정의

#### **34 CFR §300.611**

제목 **정보의 기밀유지**에 사용되는 경우:

- *파기*는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정보에서 개인 식별자의 물리적 파기나 삭제를 의미합니다.
- *교육 기록*은 연방규정집 제 34 편, 제 99 절(1974 년 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20 U.S.C. 1232g 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을 시행하는 규정)에 정의되는 “교육 기록”에 포함되는 기록 형식을 의미합니다. *FERPA* 는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고 교육청이나 그 대리인이 유지하는 기록으로 “교육 기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참가기관*은 *IDEA*, B 절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거나 정보가 입수되는 학군이나 기관, 부처를 의미합니다.

### 개인 식별 정보

#### **34 CFR §300.32**

*개인 식별*은 아래 각 호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a. 귀 자녀의 이름과 부모인 귀하의 이름, 기타 가족구성원의 이름;
- b. 귀 자녀의 주소;
- c. 귀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나 학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 d. 귀 자녀의 신원을 비교적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개인 특성 목록이나 기타 정보.

## 부모에 대한 고지

### 34 CFR §300.612

미시건주 교육부 [*Michigan Department of Education (MDE)*] 는 아래의 조치를 비롯하여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유지를 부모에게 상세히 고지하는데 적합한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고지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주 내 다양한 언어 집단의 모국어로 고지가 송부되는 범위에 대한 설명
2. 개인 식별 정보가 유지되는 아동과 정보 형식, 주 정부가 정보 수집에 사용하는 방법(정보가 수집되는 출처 포함), 정보 용도에 대한 설명
3. 참가 기관이 개인 식별 정보의 보관이나 제 3 자에 대한 공개, 유지, 파기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정책 및 절차 요약
4. *FERPA* 및 연방규정집 제 34 편, 제 99 절의 시행규정에 따른 권리를 비롯하여 본 정보에 관한 부모 및 아동의 권리 일체에 대한 설명.

주요 식별이나 파악, 평가 활동(아울러 “아동 찾기”로도 알려짐) 이전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파악, 식별, 평가하기 위한 활동을 주 전역의 부모에게 고지하는데 적합한 규모로 유통되는 신문이나 기타 매체, 또는 양측에 고지를 발행 또는 공표해야 합니다.

## 접근권

### 34 CFR §300.613

참가기관은 귀하가 *IDEA*, B 절에 따라 참가기관이 귀 자녀에 관하여 수집, 유지, 사용하는 교육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하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참가기관은 귀 자녀에 관한 교육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하기 위한 귀하의 요청을 부당한 지체 없이, *IEP* 에 관한 회의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해결 회의나 징계에 관한 심리 포함) 이전에, 어떤 경우에도 귀하가 요청을 제출한 후 45 역일 안에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할 귀하의 권리에는 아래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1. 기록의 설명 및 해석에 대한 귀하의 합리적 요청에 대해 참가기관의 답변을 요구할 권리
2. 귀하가 사본을 수령하지 않는 한 기록을 효과적으로 검사 및 검토할 수 없는 경우 기록의 사본 제출을 참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기록 검사 및 검토를 위해 대리인을 고용할 권리.

참가기관은 귀하가 후견인이나 별거, 이혼과 같은 사안에 준용되는 주법에 따라 권한이 없다는 고지를 받지 않는 한, 귀 자녀에 관한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기록

### **34 CFR §300.614**

각 참가기관은 당사자의 이름과 접근이 허용된 날짜, 당사자가 기록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비롯하여 *IDEA*, B 절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는 교육 기록에 접근하는 당사자(부모 및 참가 기관의 담당 직원 제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아동 일 인 이상에 관한 기록

### **34 CFR §300.615**

아동 일 인 이상에 관한 정보가 교육 기록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본인의 자녀에 관한 정보만 검사 및 검토하거나 해당 특정 정보의 고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 형식 및 장소 목록

### **34 CFR §300.616**

각 참가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교육 기록의 형식 및 장소 목록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수수료

### **34 CFR §300.617**

각 참가기관은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할 귀하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한 *IDEA*, B 절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기록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가기관은 B 절에 따른 정보 조사나 검색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개정

### **34 CFR §300.618**

귀 자녀에 관하여 *IDEA*, B 절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는 교육 기록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귀 자녀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는 정보를 유지하는 참가기관에 정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기관은 귀하의 요청을 접수한 후 합리적 기간 안에 귀하의 요청에 따른 정보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가기관이 귀하의 요청에 따른 정보 변경을 거절할 경우, 동 기관은 귀하에게 거절 사실을 고지하고 심리 기회, 제하에 기술하는 대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귀하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심리를 받을 권리

### **34 CFR §300.619**

참가기관은 귀하의 요청 시 귀 자녀에 관한 교육 기록의 정보가 부정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거나 귀 자녀의 프라이버시나 기타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리 기회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심리 절차

### **34 CFR §300.621**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리는 *FERPA* 에 규정된 해당 심리에 대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심리 결과

### **34 CFR §300.620**

심리 결과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귀 자녀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기관은 그에 따라 정보를 변경하고 귀하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심리 결과 정보가 부정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거나 귀 자녀의 프라이버시나 기타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기관은 귀하가 참가기관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보에 주석을 달고 반대 사유를 제공하는 진술을 귀 자녀에 관하여 유지되는 기록에 배치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귀 자녀의 기록에 배치되는 해당 설명은:

1. 참가기관이 기록이나 이의가 제기되는 부분을 유지하는 한 귀 자녀의 기록 가운데 일부로 유비해야 합니다.
2. 참가기관이 귀 자녀의 기록이나 이의가 제기되는 부분을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해당 당사자에 공개해야 합니다.

##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 동의

### **34 CFR §300.622**

*FERPA*에 따라 교육기록에 포함되는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은)가 인가되지 않는 한, 참가기관의 공무원을 제외한 당사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귀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IDEA*, B 절의 요건을 준수할 목적으로 참가 기관의 공무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참가 기관의 공무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귀하의 동의, 또는 주법에 따라 성년에 도달한 적격 자녀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귀 자녀가 귀하가 거주하는 동일 학군에 소재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재학하거나 전학할 예정인 경우, 사립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의 공무원과 귀하가 거주하는 학군 공무원 간에 귀 자녀에 관한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귀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보호수단

### **34 CFR §300.623**

각 참가기관은 수집, 보관, 공개,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대외비로 해야 합니다.

각 참가기관의 공무원 일 인은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유지를 보장할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하는 모든 개인은 *IDEA*, B 절 및 *FERPA* 에 따른 기밀유지에 관한 미시건 주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해 훈련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참가기관은 기관 안에서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이름 및 직위의 유효 명단을 공개 열람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정보의 파기

### **34 CFR §300.624**

귀 학군은 *IDEA*, B 절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한 개인 식별 정보가 귀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 없을 경우 귀하에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 시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단, 귀 자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학년, 출석 기록, 출석 수업, 이수 학년, 이수 연도에 대한 영구 기록은 무기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권리

### **34 CFR §300.625**

*FERPA* 규정에 따라, 교육 기록에 관한 부모의 권리는 만 18 세가 되는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IDEA*, B 절에 따라 교육 기록에 관한 부모의 권리 역시 만 18 세가 되는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단, 참가기관은 *IDEA*, B 절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를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 조정

---

### 조정

#### 34 CFR §300.506

##### 일반

MDE는 귀하와 학군이 주 고발이나 적법 절차 고발을 제기하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IDEA, B 절 또는 C 절에 따른 문제에 수반되는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정은 귀하가 **적법 절차 고발 제기** 제하에 기술하는 대로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적법 절차 고발을 제기하였는지 관계 없이 IDEA, B 또는 C 절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데 제공됩니다.

##### 요건

절차는 중재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1. 귀측 및 학군측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2. 적법 절차 심리를 받을 귀하의 권리를 부인 또는 지연하거나 귀하가 IDEA, B 또는 C 절에 따라 보유하는 기타 권리를 부인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3. 효과적인 조정 기법에 대해 훈련을 받은 공정한 적격 조정인이 진행합니다.

학군은 조정 절차를 선택하지 않는 부모 및 학교에게 귀하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 아래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당사자와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주내에서 적절한 대체 분쟁 해결 업체나 부모 교육정보센터, 지역사회 부모 자원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2. 귀하에게 제공되는 조정 절차의 편익을 설명하고 이의 사용을 권장하는 자.

MDE는 적격 조정인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규를 숙지하는 자의 명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MDE는 무작위나 순번제, 또는 기타 공정한 원칙 하에 조정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주는 회의 비용을 비롯하여 조정 절차 비용을 부담합니다. 본 서비스는 [특별 교육 조정 서비스 \[Special Education Mediation Services\]](http://MiKids1st.org) (<http://MiKids1st.org>)에서 제공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각 회의는 시의적절하게 일정을 정하고 귀하와 학군에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귀하와 학군이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해결을 명시하고 아래에 해당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조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일체의 논의는 대외비로 하고 후속 적법 절차 심리나 민사소송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2. 귀하와 학군을 대행할 권한이 있는 학군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을 마친 조정 계약은 주 관할법원(주법에 따라 본 소송 형식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이나 미국 지방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대외비로 해야 합니다. 이는 *IDEA*, B 또는 C 절에 따라 지원을 받는 주의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의 향후 적법 절차 심리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조정인의 중립성**

조정인은:

1. *MDE* 나 귀 자녀의 교육이나 보호에 관여하는 학군의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조정인의 객관성에 저촉되는 인적, 전문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정인 자격이 있는 자가 조정인 활동에 대해 기관이나 학군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군이나 주 기관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주 고발 절차

---

### 적법 절차 심리 고발과 주 고발 절차의 차이

*IDEA*, B 절에 대한 규정은 주 고발과 적법 절차 고발 및 심리에 별도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개인이나 조직은 학군이나 *MDE*, 기타 공기관이 B 절이나 C 절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식별이나 평가, 교육 배치의 개시 또는 변경 제안이나 거부, 또는 아동에 대한 *FAPE*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 또는 학군만 적법 절차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DE* 직원은 일반적으로 일정이 적절히 연장되지 않는 한 60 역일 일정 안에 주 고발을 해결해야 하지만, ALJ는 귀하나 학군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한, **해결 절차에 따라** 본 문서에 기술하는 대로 해결 기간이 종료된 후 45 역일 안에 적법 절차 고발을 심리하고 (해결 회의나 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주 고발 및 적법 절차 고발, 해결 및 심리 절차는 아래에 상세히 기술됩니다.

### 주 고발 절차의 채택

#### 34 CFR §300.151

##### 일반

*MDE*는 아래 각 호를 위해 서면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행정규칙, 규칙 340.1701a, 340.1851-1853 참조):

1. 타 주 소속 조직이나 개인이 제기하는 고발을 비롯한 주 고발 해결을 위한 절차
2. 고발장 제출.
3. 부모교육정보센터나 보호 및 지지 기관, 자립생활센터, 기타 적절한 주체를 비롯하여 부모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주 고발 절차를 폭넓게 배포하기 위한 절차.

##### 적절한 서비스 거부에 대한 구제책

*MDE*가 적절한 서비스 제공 불이행을 판단한 주 고발을 해결함에 있어, *MDE*는 아래 각 호를 해결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시정 조치를 비롯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불이행
2. 전체 장애아에 대한 향후 적절한 서비스 제공.

## 최소 주 고발 절차

### 34 CFR §300.152

#### 시한; 최소 절차

MDE 는 특수교육청 [Office of Special Education (OSE)] 을 통해 아래 목적을 위해 고발장이 제출된 후 60 역일 시한을 주 고발 절차에 포함시킵니다:

1.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자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합니다.
2. 고발장의 주장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고발인에게 부여합니다.
3. 최소한 아래 각 호를 비롯하여 학군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고발에 대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a) 기관의 재량에 따라 고발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 (b) 고발을 제기한 부모와 기관이 조정 참여를 자발적으로 합의할 기회
4. 관련 정보 일체를 검토하고 학군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IDEA, B 절의 요건을 위반하는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5. 고발장의 각 주장을 언급하고 아래 각 호가 포함되는 서면 결정을 고발인에게 발행합니다: (a) 사실확인 및 결론; (b) MDE 최종 결정의 근거.

#### 시한 연장; 최종 결정; 이행

아울러 상기 MDE 절차는:

1. 아래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60 역일 시한의 연장을 허가해야 합니다: (a) 특정 주 고발에 대해 이례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b) 부모나 학군, 기타 공공기관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한을 연장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2. 필요한 경우 아래 각 호를 비롯하여 MDE 의 최종 결정의 효과적 이행에 필요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a) 기술 지원 활동; (b) 협상; (c) 준수를 달성할 시정 조치.

#### 주 고발 및 적법 절차 심리

적법 절차 고발 제기예따라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적법 절차 심리의 대상되는 서면 주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한 건 이상이 해당 심리에 속하는 다양한 쟁점이 주 고발에 포함되는 경우, 주 정부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리에서 취급되고 있는 주 고발이나 그 일부를



보류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리에 속하지 않는 주 고발의 쟁점은 상술한 시한 및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주 고발에 제기된 쟁점이 종전에 동일 당사자 (귀하 및 학군)가 참여한 적법 절차 심리에서 결정된 경우,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은 해당 쟁점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며 *MDE* 는 결정이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발인에 고지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학군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불이행을 주장하는 고발은 *MDE* 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 주 고발의 제기

### 34 CFR §300.153

조직이나 개인은 상술한 절차에 따라 서명을 필한 서면 주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고발장에는 아래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학군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아래 각 호를 위반하였다는 진술:
  - a. 특수교육에 대해 유효한 행정규칙의 조항
  - b.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1976 PA 451, MCL 380.1 et seq.
  - c. 2004 년 장애인교육법, 20 U.S.C., 33 장, §1400 et seq., 및 동 법을 이행하는 규정, 34 C.F.R. 제 300 절, 및 34 C.F.R. 제 303 절. 진술의 토대가 되는 사실
  - d. 중간 학군 계획
  - e.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보고서, 심리 사무소 결정, 특수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관한 법원 결정
  - f. *IDEA* 에 따른 연방기금에 대한 주 정부 신청.
2. 고발인에 대한 서명 및 연락처 정보
3. 특정 아동에 관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 a. 아동의 이름 및 아동의 주거지 주소
  - b. 아동이 재학하는 학교명
  - c.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아동에 대해 제공되는 연락처 정보, 및 아동이 재학하는 학교명
  - d. 문제에 관한 사실을 비롯하여 아동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
  - e. 고발이 제기될 당시 고발장을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공개 및 제공되는 경우 문제에 대한 해결안.

고발장은 *MDE* 나 *ISD* 가 고발장을 접수하기 이전 일 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 고발장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군이나 기타 공공기관에 고발장 사본을 전달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OSE* 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MDE* 는 주 고발장 제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견본 양식을 개발하였습니다. 견본 양식은 [OSE 웹사이트 \(www.michigan.gov/specialeducation\)](http://www.michigan.gov/specialeducation)에 제공됩니다. 귀하는 견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고발장에는 주 고발장 제출을 위한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기 1-4 참조).

---

## 적법 절차 고발 절차

---

### 적법 절차 고발장 제출

#### 34 CFR §300.507

##### 일반

귀하 또는 학군은 귀 자녀의 식별이나 평가, 교육 배치의 개시 또는 변경 제안이나 거부, 또는 귀 자녀에 대한 *FAPE*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해 적법 절차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고발은 귀하나 학군이 적법 절차 고발의 근거를 형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해 숙지하였거나 숙지했어야 하기 전에 2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일정 안에 적법 절차 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일정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학군이 고발장에 식별된 쟁점을 해결했다고 구체적으로 허위진술한 경우
2. 학군이 *IDEA*, B 절 또는 C 절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류한 경우.

##### 부모에 대한 정보

귀하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귀하나 학군이 적법 절차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 학군은 역내에 제공되는 무료 또는 저가 법률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귀하에 고지해야 합니다.

### 적법 절차 고발

#### 34 CFR §300.508

##### 일반

귀하나 학군(또는 귀하나 학군의 변호사)은 심리를 신청하기 위해 *MDE*에 적법 절차 고발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상대방에 제공해야 합니다. 고발장에는 아래에 기재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대외비로 해야 합니다.

## 고발장의 내용

적법 절차 고발장에는 아래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아동의 이름
2. 아동의 주거지 주소
3. 아동의 학교명
4. 아동이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아동의 연락처 및 아동의 학교명
5. 문제에 관한 사실을 비롯하여 제안 또는 거부된 조치에 관한 아동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
6. 고발이 제기될 당시 귀하나 학군에 공개 및 제공되는 경우 문제에 대한 해결안.

## 적법 절차 고발에 관한 심리 이전에 요구되는 고지

귀하나 학군(또는 귀하나 학군의 변호사)은 상기 정보가 포함되는 적법 절차 고발을 제대로 제출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법 절차 고발장은 *MDE* 및 상대방이 수령할 때 제대로 제출된 것으로 합니다.

## 고발의 충분성

적법 절차 고발의 진행을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 고발장을 수령하는 당사자 (귀하 또는 학군)가 고발장을 수령한 후 15 역일 안에 적법 절차 고발장이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사실을 ALJ 및 상대방에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고발은 충분하다고(상기 내용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령 당사자 (귀하 또는 학군)가 적법 절차 고발을 부족하다고 간주하는 고지를 수령한 후 5 역일 안에, ALJ 는 적법 절차 고발이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지 결정하고 귀하와 학군이 이를 즉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고발장 개정

귀하나 학군은 아래의 경우에만 고발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서면으로 변경을 승인하고 아래에 기술하는 해결 회의를 통해 적법 절차 고발을 해결할 기회가 부여되는 경우
2. ALJ 가 적법 절차 심리가 개시되기 5 일 이전에 변경 허가를 허여하는 경우.

고발 당사자(귀하나 학군)가 적법 절차 고발장을 변경하는 경우, 해결 회의 일정(고발장 수령 후 15 역일 이내)과 해결 시한(고발장 접수 후 30 역일 이내)은 개정된 구발장이 제출되는 당일에 재개됩니다.

### 적법 절차 고발에 대한 학군의 대응

학군이 사전 서면 고지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귀하의 적법 절차 고발장에 포함되는 주제에 관한 사전 서면 고지를 귀하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 학군은 적법 절차 고발장을 수령한 후 10 역일 안에 아래 각 호가 포함되는 답변을 귀하에 송부해야 합니다:

1. 학군이 적법 절차 고발장에 제기된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한 사유에 대한 설명
2. 귀 자녀의 IEP 팀이 검토한 기타 옵션과 해당 옵션이 불허된 사유에 대한 설명.
3. 학군이 조치 제안이나 거부에 대한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나 평가,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4. 학군이 제안 또는 거부한 조치에 관한 기타 사실에 대한 설명.

단, 상기 1-4 항의 정보는 귀하의 적법 절차 고발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학군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 적법 절차 고발에 대한 기타 당사자의 대응

직전에 소제목, 적법 절차 고발에 대한 학군의 대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 절차 고발장을 수령하는 당사자는 고발장을 수령한 후 10 역일 안에 고발장에 포함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답변을 상대방에 송부해야 합니다.

### 견본 양식

#### 34 CFR §300.509

MDE 는 적법 절차 고발장 제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견본 양식을 개발하였습니다. 귀하는 MDE 견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적법 절차 고발장에는 적법 절차 고발장 제출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견본 양식은 [OSE 웹사이트](http://www.michigan.gov/specialeducation) ([www.michigan.gov/specialeducation](http://www.michigan.gov/specialeducation))에 제공됩니다.

(참고: 견본 양식의 사용은 상대방이 고발장의 충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ALJ 가 고발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적법 절차 고발 및 심리가 계류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배치

### 34 CFR §300.518

아래 장애아 징계 절차에 규정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고발이 *MDE*에 제출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는 경우, 귀 자녀는 해결 절차 시한 동안과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나 법원 소송절차의 결정을 대기하는 동안 현행 교육 배치에 잔류해야 합니다. 단, 귀하와 주 또는 학군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적법 절차 고발장이 공립학교 입학 신청과 관련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귀하의 동의 하에 해당 소송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정식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IDEA*, C 절에 따른 서비스에서 *IDEA*, B 절로 전환되고 아동이 삼 세가 되었기 때문에 C 절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아동에 대해 *IDEA*, B 절에 따른 최초 서비스 신청이 적법 절차 고발에 포함되는 경우, 학군은 아동이받은 C 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이 *IDEA*, B 절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고 귀하가 아동이 최초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데 동의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군은 이의가 없는(귀하와 학군이 동의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해결 절차

### 34 CFR §300.510

#### 해결 회의

학군은 귀하 및 귀하의 적법 절차 고발장에 식별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관련 *IEP* 팀원과 해결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해결 회의는 적법 절차 고발장이 *MDE*에 제출되고 학군에서 접수한 후 15 역일 안에 소집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리는 해결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개시될 수 없습니다. 회의는:

1. 학군을 대신하여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학군의 대리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2. 귀하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는 한 학군 변호사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귀하와 학군은 회의에 참석할 관련 *IEP* 팀원을 결정합니다.

회의 목적은 귀하가 적법 절차 고발과 해당 고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제반 사실을 논의하여 학군이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해결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귀하와 학군이 회의 유보를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2. 귀하와 학군이 **조정**에 기술하는 대로 조정 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해결 기간**

학군이 적법 절차 고발장을 접수한 후 30 역일 안에(해결 절차를 위한 시간 동안) 귀하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적법 절차 고발을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 적법 절차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발행을 위한 45 역일 시한은 30 역일 해결 기간이 만료될 때 개시되며, 아래에 기술하는 대로 30 역일 해결 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일정한 예외를 둡니다.

귀하와 학군이 해결 절차를 유보하거나 조정을 이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해결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귀하의 불이행은 귀하가 회의에 참가할 때까지 해결 절차의 일정과 정식 절차 심리를 지연시킵니다.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해당 노력을 문서로 기록한 후 학군이 해결 회의에 대한 귀하의 참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학군은 30 역일 해결 기간이 종료될 때 ALJ 에 귀하의 적법 절차 고발의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노력의 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상호 합의하는 일시와 장소를 주선하기 위한 학군의 노력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실제 전화통화나 시도 및 통화 결과의 세부 기록
2. 귀하에게 송부된 서한 및 접수 응답 사본
3. 귀하의 자택이나 직장에 대한 상세한 방문 기록 및 방문 결과.

학군이 귀하의 적법 절차 고발의 고지를 수령한 후 15 역일 안에 해결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해결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45 역일 정식 절차 심리 일정의 개시 명령을 ALJ 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0 역일 해결 기간의 조정**

귀하와 학군이 해결 회의를 유보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정식 절차 심리에 대한 45 역일 일정은 익일에 개시됩니다.

조정이나 해결 회의가 개시된 후 30 역일 해결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하와 학군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45 역일 일정은 익일에 개시됩니다.

귀하와 학군이 조정 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0 역일 해결 기간이 종료되 때, 양 당사자는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조정을 계속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나 학군이 추후 조정 절차에서 철수하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45 역일 일정은 익일에 개시됩니다.

### **서면 합의 계약**

해결회의에서 분쟁 해결이 성사될 경우, 귀하와 학군은 아래와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귀하와 학군을 대행할 권한이 있는 학군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2. 주 관할법원(본 소송 형식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이나 미국 지방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검토 기간**

귀하와 학군이 해결 회의의 결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 (귀하 또는 학군)은 귀하와 학군이 계약에 서명한 후 3 업무일 안에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 적법 절차 고발 심리

---

###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 34 CFR §300.511

##### 일반

적법 절차 고발장이 제출되는 경우, 분쟁에 관련된 귀하나 학군은 **적법 절차 고발** 및 **해결 절차** 조항에 기술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공정한 행정법 판사

ALJ 는 최소한:

1. *MDE* 또는 아동의 교육이나 보호에 관여하는 학군의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특정인이 *ALJ* 재직으로 해당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의 종업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심리에서 ALJ 의 객관성에 저촉되는 인적, 전문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3. *IDEA* 의 조항과 *IDEA* 에 관한 연방 및 주 규정, *IDEA* 에 대한 연방 및 주 법원의 법률 해석을 숙지 및 이해해야 합니다.
4. 적절한 표준 법률 실무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ALJ 는 주 공무원 직계상 변호사로 주 행정심리규칙사무국 [*State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and Rules (SOAHR)*]에서 고용하는 직원입니다. *MDE* 는(*SOAHR* 을 통해)는 *ALJ* 로 재직하는 자의 자격 진술서가 포함되는 목록을 보관합니다.

##### 적법 절차 심리의 주제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당사자(귀하 또는 학군)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고발장에 언급되지 않았던 쟁점을 적법 절차 심리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심리 요청 기한

귀하 또는 학군은 고발장에 언급된 쟁점을 숙지하거나 숙지하였어야 하는 일자 이후 이 년 안에 적법 절차 고발을 제기해야 합니다.

## 기한에 대한 예외조항

귀하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적법 절차 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일정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학군이 귀하가 고발장에 제기하는 문제 또는 쟁점을 해결했다고 구체적으로 허위진술한 경우
2. 학군이 *IDEA*, B 절 또는 C 절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류한 경우.

## 심리권

### 34 CFR §300.512

#### 일반

적법 절차 심리 당사자(징계절차에 관한 심리 포함)는 아래의 권리가 있습니다:

1. 변호인 및/혹은 장애아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이나 교육을 받은 자를 대동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권리
2.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과 대면하고 반대신문을 하고 증인의 출석을 강요할 권리.
3. 심리 오 업무일 이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증거의 제출을 금지할 권리
4. 서면, 또는 귀하의 재량에 따라 전자, 축어 심리 기록을 입수할 권리
5. 서면, 또는 귀하의 재량에 따라 전자 사실 확인 및 결정을 입수할 권리.

#### 추가 정보 공개

적법 절차 심리 오 일 이전에, 귀하와 학군은 해당 일자에 작성한 전체 평가와 해당 평가를 토대로 귀하 또는 학군이 심리에 사용할 예정인 권고를 상대방에 공개해야 합니다.

ALJ 는 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심리에서 관련 평가나 권고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심리에서 부모의 권리

귀하는 아래의 권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귀 자녀를 출석시킬 권리.
2. 심리를 공개할 권리
3. 심리 기록과 사실 확인, 결정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 권리.

## 심리 결정

### 34 CFR §300.513

#### 행정법 판사의 결정

귀 자녀가 *FAPE* 를 받았는가에 대한 ALJ 의 결정은 실체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ALJ 는 절차상의 결점이 하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귀 자녀가 *FAPE* 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FAPE* 에 대한 귀 자녀의 권리를 저해한 경우
2. 자녀에 제공되는 *FAPE* 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귀하의 권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3. 교육 편익의 박탈을 초래한 경우.

#### 해석 조항

상기 조항은 ALJ 가 *IDEA*, B 절에 따른 연방규정의 절차 보호수단 조항(34 CFR §§300.500 내지 300.536)에 포함되는 요건의 준수를 학군에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별도 요청

*IDEA*, B 절에 따른 연방규정의 절차 보호수단 조항(34 CFR §§300.500 내지 300.536)은 귀하가 기 제출된 적법 절차 고발장과 별도의 쟁점에 대해 별도로 적법 절차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자문위원회 및 일반인에 대한 평결 및 결정

*MDE* 는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후:

1. 적법 절차 심리에서 이루어진 평결 및 결정을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 평결 및 결정을 일반에 공개해야 합니다.

---

## 항소

---

### 결정의 최종 효력; 항소; 공정한 재심

#### **34 CFR §300.514**

##### 심리 결정의 최종 효력

적법 절차 심리에서 이루어진 결정(징계 절차에 관한 심리 포함)은 최종 결정입니다. 단, 심리에 참여한 당사자(귀하 또는 학군)는 아래에 기술하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심리 일정 및 편의

#### **34 CFR §300.515**

MDE는 30 역일 해결 회의 기간이 만료된 후 45 역일 안에, 또는 소제목 **30 역일 해결 기간의 조정**:에 기술하는 대로 조정된 시간이 만료된 후 45 역일 안에 하기 각 호가 조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심리에서 최종 결정이 채택됩니다.
2. 결정 사본은 각 당사자에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ALJ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 시 상술한 45 역일 시한의 구체적인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각 심리는 귀하 및 귀 자녀에게 비교적 편리한 일시와 장소에 진행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시한을 비롯한 민사소송

#### **34 CFR §300.516**

##### 일반

적법 절차 심리(징계 절차에 관한 심리 포함)의 평결 및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귀하 또는 학군)는 적법 절차 심리의 주제였던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은 관할법원(본 소송 유형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이나 분쟁 금액에 관계 없이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귀하 또는 학군)은 ALJ의 결정일 이후 90 역일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추가 절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1. 행정절차의 기록을 접수합니다.
2. 귀하의 요청 또는 학군의 요청 시 추가 증거를 심리합니다.
3. 증거의 우월성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책을 허여합니다.

## 지방법원의 관할권

미국 지방법원은 분쟁 금액에 관계 없이 *IDEA*, B 절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을 판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 해석 규칙

*IDEA*, B 절의 규정은 미국 헌법이나 1990년 미국장애인법, 1973년 재활법 제 V 편(제 504 조), 장애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와 절차, 구제책을 제약 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동 법에 따라 *IDEA*, B 절에도 제공되는 구제책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기 적법 과정 절차는 당사자가 *IDEA*, B 절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한도 안에서 소진되어야 합니다. 즉, 귀하는 *IDEA*에 제공되는 구제책과 중복되는 구제를 기타 법률에 따라 구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기타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IDEA*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 구제책을 사용한 후(즉, 적법 절차 고발, 해결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절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변호사 수입료

### 34 CFR §300.517

#### 일반

*IDEA*, B 절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이나 소송절차에서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자체 재량에 따라 귀하에 대한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 변호사 수입료를 재정할 수 있습니다.

*IDEA*, B 절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이나 소송절차에서 귀하의 변호사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자체 재량에 따라 승소 주 교육기관이나 학군에 대한 비용의 일부로 귀하의 변호사가 지불해야 할 합리적 변호사 수임료를 재정할 수 있습니다: (a) 경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고발장이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b) 소송이 경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음이 명확한데도 소송을 지속한 경우.

*IDEA*, B 절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이나 소송절차에서, 적법 절차 심리나 추후 소송에 대한 귀하의 요청이 소송이나 소송절차를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이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액시키는 등,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경우, 법원은 법원은 자체 재량에 따라 승소 주 교육기관이나 학군에 대한 비용의 일부로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지불해야 할 합리적 변호사 수임료를 재정할 수 있습니다,

### 수임료 재정

법원은 합리적 변호사 수임료를 아래와 같이 재정합니다:

1. 수수료는 제공 서비스의 유형 및 품질에 대해 소송이나 심리가 발생한 지역사회에 유효한 요율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재정 수임료를 계산하는 데는 보너스나 승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아래 각 호의 경우 귀하에 대한 서면 합의 제의 이후 이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IDEA*, B 절에 따른 소송이나 소송절차에서 수임료를 재정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은 변상할 수 없습니다:
  - a.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68 규칙에서 지정하는 기한 안에, 적법 절차 심리의 경우,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개시되기 10 역일 이전에 제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b. 10 역일 안에 제의가 수락되지 않을 경우
  - c. 법원이나 ALJ가 귀하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구제책이 합의안보다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승소하고 합의 제의를 거부할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귀하에게 변호사 수임료 및 관련 비용의 재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IEP* 팀 회의가 행정소송이나 법원소송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는 한 회의에 관한 수임료는 재정될 수 없습니다.

4. 아울러 **조정**에 기술하는 대로 조정에 대한 수임료도 재정될 수 없습니다.
5. **해결 회의**에 기술하는 대로, 해결 회의는 행정 심리나 법원 소송으로 인해 소집되는 회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아울러 본 변호사 수임료 조항의 목적을 위해 행정 심리나 법원 소송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이 판단되는 경우, *IDEA*, B 절에 따라 재정되는 변호사 수임료 액수를 적절히 감액합니다:

1.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소송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분쟁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
2. 그밖에 재정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의 액수가 비교적 유사한 능력과 명성,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이행하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지역사회에 유효한 시간 요율을 부당하게 초과하는 경우
3. 소송이나 소송절차의 성격을 고려할 때 소요된 시간 및 제공된 법률 서비스가 과도한 경우
4. 귀하를 대행하는 변호사가 **정식 절차**에 기술하는 정식 절차 요청 공지에 적절한 정보를 학군에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단, 주 또는 학군이 소송이나 소송절차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켰거나 *IDEA*, B 절의 절차 보호수단 조항에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수임료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

## 장애아 징계 절차

---

### 교직원의 권한

#### 34 CFR §300.530

##### 사안별 판단

교직원은 징계에 관한 아래 요건에 따라 실시된 배치 변경이 교칙을 위반하는 장애아에게 적합한지 판단할 때 사안별로 고유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교직원은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대해서도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경우, 연속 **10 수업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칙을 위반하는 장애아를 현행 배치에서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이나 기타 환경으로 이동시키거나 정학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이동이 배치의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 한 교직원은 별도의 부정 사건에 대해 동일 학년도 안에 연속 **10 수업일** 이내로 아동의 추가 이동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는 아래 **징계 이동으로 인한 배치 변경** 참조).

장애아가 동일 학년도에 총 **10 수업일** 동안 현행 배치에서 제외된 경우, 학군은 해당 학년도 후속 이동 기간 동안 소제목, **서비스**에 따라 아래에 요구되는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추가 권한

교칙을 위반한 행동이 아동의 장애 발현이 아니고 (아래 **발현 판단** 참조) 징계성 배치 변경이 연속 **10 수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교직원은 해당 장애아에게 장애가 없는 아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는 **서비스**에 따라 아래에 기술되는 서비스를 해당 아동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의 **IEP** 팀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을 판단합니다.

##### 서비스

장애아의 현행 배치에서 제외된 장애아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임시 대체 교육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유사하게 제외된 비장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도에 **10 수업일 이내**의 기간 동안 현행 배치에서 제외된 장애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시건주는 징계 사유로 인해 제외된 비장애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0 수업일** 이상 현행 배치에서 제외되는 장애아는:

1. 다른 환경에서도 장애아가 일반 교과과정에 계속 참가하고 아동의 *IEP*에 명시되는 목적 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2. 행동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는 적절한 기능적 행동 평가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FBA)*]와 행동 개입 서비스 및 수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아가 동일 학년도 안에 **10 수업일** 동안 현행 배치에서 제외된 후, 현행 제외가 연속 **10 수업일** 이내이고 **제외**가 배치의 변경(아래 정의 참조)이 다른 환경에서도 장애아가 일반 교과과정에 계속 참가하고 아동의 *IEP*에 명시되는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데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를 판단합니다.

제외가 배치의 변경인 경우(아래 정의 참조), 아동의 *IEP* 팀은 아동이 다른 환경에서도 장애아가 일반 교과과정에 계속 참가하고 아동의 *IEP*에 명시되는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데 적합한 서비스를 판단합니다.

### **발현 판단**

교칙 위반으로 인해 장애아 배치 결정을 내린 후 **10 수업일** 안에(연속 **10 수업일** 이내이고 배치 변경이 아닌 제외는 제외), 학군과 부모, 관련 *IEP* 팀원은(부모와 학군이 결정)은 아래 각 호를 판단하기 위해 아동의 *IEP*와 교사 관찰, 부모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학생 파일에 포함된 관련 정보 일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1. 해당 행위가 아동의 장애로 발생하였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었는가
2. 해당 행위가 아동의 *IEP*를 실행하지 않은 학군의 불이행에 따른 직접적 결과인가

학군과 부모, 관련 아동 IEP 팀원이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행위는 아동의 장애 발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군과 부모, 관련 아동 IEP 팀원이 해당 행위가 아동의 IEP 를 실행하지 않은 학군의 불이행에 따른 직접적 결과였다고 판단할 경우 학군은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행동이 아동의 장애 발현이라는 판단

학군과 부모, 관련 IEP 팀원이 행위가 아동의 장애 발현이라고 판단할 경우, IEP 팀은 아래 조치를 택일해야 합니다:

1. 배치 변경을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학군이 FBA 를 실시하지 않는 한 FBA 를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행동 개입 계획 [*Behavioral Intervention Plan (BIP)*] 을 시행합니다.
2. BIP 가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BIP 를 검토하고 행동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소제목, **특별 상황**에 따라 아래에 기술되지 않는 한, 학군은 아동이 제외된 배치로 아동을 복귀시켜야 합니다. 단, 부모와 학군이 BIP 수정의 일환으로 배치 변경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특수 상황

행동이 아동 장애의 발현이었는지 관계 없이, 아동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교직원은 최대 45 수업일 동안 임시 대체 교육 환경(아동의 IEP 팀에서 판단)으로 아동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1. 아동이 무기를 휴대하고 등교하거나 MDE 나 학군 관할에 속하는 학교나 학교 부지, 학교 행사에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2. MDE 나 학군 관할에 속하는 학교나 학교 부지, 학교 행사에서 고의로 불법 약물을 보유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물질을 판매하거나 이의 판매를 모집하는 경우
3. MDE 나 학군 관할에 속하는 학교나 학교 부지, 학교 행사에서 타인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

## 정의

**규제물질**은 규제물질법 제 202 조(c), 부칙 I, II, III, IV, 또는 V(21 U.S.C. 812(c))에 따라 식별되는 약물이나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불법 약물**은 규제물질을 의미하지만, 면허를 보유한 의료전문가의 감독 하에 적법하게 보유 또는 사용하거나 해당 법률이나 연방법의 기타 규정에 따라 기타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보유 또는 사용하는 규제물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신체 상해**는 미법전 제 18 편, 제 1365 조 h)(3)에 따라 부여되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의미를 갖습니다. (별첨 1 참조)

**무기**는 미법전 제 18 편, 제 930 조(g)(2)에 따라 부여되는 “위험 물질”의 의미를 갖습니다. (별첨 1 참조)

## 통지

학군은 교칙 위반을 이유로 아동 배치 변경이 이동을 결정하는 당일에 부모에게 해당 결정을 통지하고 절차 보호수단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징계성 이동으로 인한 배치 변경

### 34 CFR §300.536

아래 각 호의 경우 현행 교육 배치에서 장애아를 제외하는 행위는 **배치의 변경**입니다.

1. 해당 제외가 연속 10 수업일 이상인 경우 **또는**
2. 아래 각 호로 인하여 패턴을 구성하는 일련의 제외가 아동에게 적용된 경우:
  - a. 일련의 제외 기간이 학년도 안에서 10 수업일 이상인 경우
  - b. 아동의 행동이 일련의 제외를 초래한 이전 사건에서 아동의 행동과 상당히 유사한 경우
  - c. 각 제외 기간이나 아동이 제외한 총 시간, 제외의 근접성과 같은 기타 추가 요인.

제외 패턴이 배치의 변경을 구성하는가는 학군에서 사안별로 판단하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정식 절차 및 사법 소송절차를 통한 검토를 받습니다.

## 상황 판단

### 34 CFR § 300.531

IEP 팀은 배치의 변경인 **제외**, 및 위의 **추가 권한** 및 **특수 상황**에 따른 제외에 대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을 판단해야 합니다.

## 항소

### 34 CFR § 300.532

#### 일반

장애아의 부모는 아래 각 호에 반대할 경우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적법 절차 고발장 (위 참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본 징계 규정에 따라 실시된 배치에 관한 결정
2. 상술한 발현 판단.

학군은 현행 아동 배치의 유지가 아동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법 판사의 권한

소제목, **공정한 행정법 판사**에 기술되는 요건에 부합하는 ALJ 는 적법 절차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ALJ 는:

1. 제외가 **교직원의 권한**에 기술되는 요건의 위반이고 아동의 행동이나 장애의 발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이 제외된 배치로 장애아를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2. 현행 아동 배치의 유지가 아동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45 수업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장애아의 배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학군이 최초 배치로 아동을 복귀시키는 것은 아동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심리 절차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학군인 해당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 **적법 절차 고발, 적법 절차 고발에 관한 심리**에 기술되는 요건에 부합하는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MDE*가 심리가 요청된 후 **20** 수업일 안에 진행되고 심리 이후 **10** 수업일 안에 결정을 도출해야 하는 신속 심리 절차를 주선하는 경우.○
2. 부모와 학군이 회의를 유보하기로 서면에 합의하거나 조정을 이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해결 회의는 적법 절차 고발의 고지를 수령한 후 **칠** 역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고발이 접수된 후 **15** 역일 안에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심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속 심리 절차로 내려진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단, 심리에 참여한 당사자(귀하 또는 학군)는 “소송 제기 시한을 비롯한 민사소송”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항소 중 배치

### **34 CFR §300.533**

전술한 대로 부모나 학군이 징계 문제에 대해 정식 고발장을 제출한 경우 아동은(부모와 *MDE* 또는 학군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 책임자의 결정이 나오거나, 또는 교직원의 권한에 규정 및 기술되는 제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가운데 이른 일자가 될 때까지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잔류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

### **34 CFR §300.534**

#### 일반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고 교칙을 위반하였으나, 학군이 징계 조치를 유발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아동이 장애아라는 사실을 숙지한 경우(아래에 정의), 아동은 본 고지에 기술되는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징계 문제에 대한 숙지의 근거

징계 조치를 유발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군은 아동이 장애아라는 사실을 숙지했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1. 자녀의 부모가 주무 교육기관의 감독 또는 행정 직원이나 자녀의 교사에게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우려를 서면으로 표명한 경우
2. 부모가 *IDEA*, B 절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에 관한 평가를 요청한 경우
3. 자녀의 교사나 학군 직원이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 패턴에 대해 구체적인 우려를 학군의 특수교육 책임자 또는 학군의 기타 감독 담당자에게 직접 표명한 경우.

## 예외

아래 각 호의 경우, 학군은 해당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1.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평가를 불허하고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2. 아동이 평가를 받았으나 *IDEA*, B 절에 따라 장애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숙지의 근거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조건

위 징계 문제에 대한 숙지의 근거 및 예외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아동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군이 아동이 장애아라는 사실을 숙지할 수 없는 경우, 유사 행동에 가담한 비장애아에 적용되는 징계 조치를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징계 조치가 아동에게 적용되는 기간 동안 아동의 평가에 대한 신청이 제기될 경우, 평가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은 학교 당국이 판단하는 교육 배치에 잔류하며, 여기에는 교육 서비스가 없는 정학이나 퇴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군이 진행한 평가의 정보와 부모가 제공한 정보를 참작하여 아동이 장애아로 판단될 경우, 학군은 상술한 징계 요건을 비롯하여 *IDEA*, B 절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법집행 및 사법 당국 회부 및 이에 의한 조치

### 34 CFR §300.535

IDEA, B 절은:

1. 장애아가 범한 범죄를 주무 당국에 신고하는 기관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2. 주법 집행 및 사법 당국이 장애아가 범한 범죄에 적용되는 연방법 및 주법에 대한 책임을 행사하는 조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 기록의 전달

학군이 장애아가 범한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학군은:

1. 기관이 범죄를 신고하는 당국의 검토를 위해 아동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아동의 특수교육 및 징계기록 사본의 전달은 *FERPA* 에서 허가하는 범위로 국한됩니다.

---

## 공공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한 부모에 대한 요건

---

### 일반

#### 34 CFR §300.148

학군이 귀 자녀에게 *FAPE* 를 제공하였고 귀하가 사립학교나 시설에 자녀의 배치를 선택한 경우, *IDEA*, B 절은 학군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비롯하여 사립학교나 시설에서 귀하의 장애아에게 실시되는 교육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사립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은 34 CFR §§300.131 내지 300.144 에 따라 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치한 자녀에 관한 B 절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 요구가 취급되는 모집단에 귀 자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립학교 배치에 대한 변상

귀 자녀가 종전에 학군의 권한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귀하가 학군의 동의나 추천 없이 사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귀 자녀의 등록을 선택하는 경우, 법원이나 ALJ 는 기관이 해당 등록 이전에 귀 자녀에게 *FAPE* 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해당 등록 비용을 귀하에게 변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LJ 또는 법원은 해당 배치가 *MDE* 및 학군이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주 표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귀하의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변상에 대한 제한

상기 호에 기술되는 변상 비용은 감액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하기의 경우: (a) 귀하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이동시키기 전에 참석한 가장 최근 *IEP* 회의에서, 귀하의 우려와 공공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자녀를 등록시킬 의사의 진술을 비롯하여 학군이 귀 자녀에게 *FAPE* 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한 배치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IEP* 팀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b) 최소한 귀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제외되기 10 업무일 이전에(영업일에 발생하는 휴일 포함) 해당 정보의 서면 고지를 학군에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2. 귀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제외되기 전에 학군이 자녀를 평가할 의사에 관한 사전 서면 고지(적절하고 합리적인 평가 목적의 진술 포함)를 귀하에 제공하였으나 귀하가 자녀를 평가에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3. 귀하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평결 시.



단, 변상 비용은:

1. 아래 각 호의 경우 고지 제공 불이행을 이유로 감액 또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a) 학교가 귀하의 고지 제공을 방해한 경우; (b) 귀하가 상술한 고지 제공 책임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 (c) 상기 요건의 준수가 귀 자녀에게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아래 각 호의 경우 필수 고지를 제공하지 않은 부모의 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이나 ALJ의 재량에 따라 감액 또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a) 부모가 영어로 읽고 쓸 수 없는 경우; (b) 상기 요건의 준수가 자녀에게 중대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성년 시 부모의 권리 이전

### **34 CFR §300.520**

장애 학생이 성년에 도달하는 경우(법원이 법률후견인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 미시건주에서 18 세), 공공기관은 *IDEA*, B 절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를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며, *IDEA*, B 절에 따라 부모에게 부여된 일체의 권리는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부모에게 부여된 일체의 권리는 성년에 도달하고 성인이나 미성년 연방, 주, 또는 지방 교정시설에 수감된 학생에 대해서도 이전됩니다.

---

## 별첨 A - 연방 정의

---

### Serious Bodily Injury

#### 18 USC 1365(h)

3. “중대한 신체 상해”는 아래 각 호가 수반되는 신체 상해를 의미합니다 -

- (A) 실질적 사망 위험
- (B) 극심한 육체적 고통
- (C) 장기적으로 명백한 기형
- (D) 신체 부위의 기능이나 기관, 지능의 장기적 손실이나 손상

4. “신체 상해”는 아래 각 호를 의미합니다 -

- (A) 절단, 찰과상, 타박상, 화상, 기형
- (B) 육체적 고통
- (C) 질병
- (D) 신체 부위의 기능이나 기관, 지능의 손상
- (E) 기간에 관계 없는 기타 신체 상해.

#### 무기

#### 18 USC 930(g)

(2) “위험 무기”는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하는데 사용되거나 이를 즉시 초래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무기나 장치, 도구, 재료, 물질을 의미합니다. 단, 칼날의 전장이 2 1/2 이하인 주머니칼은 해당 용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